

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의 안

76

번 호

제출년월일 : '99. 6. 7.

제 출 자 : 서초구청장

1. 제안이유

제3차 서초구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
조문을 정비코자 함

2. 주요골자

- 가. (구민등의 책무)조항은 상위법과 중복되며, 청결유지조항은 주관적·
선언적 규정으로 폐지코자 함(현행 제4조)
- 나. (봉투 판매소의 지정해제) 조항은 봉투판매소의 지정으로 가름하기
때문에 폐지코자 함(현행 제20조)
- 다. (가산금등) 조항은 규격봉투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문화된 규
정이므로 폐지코자 함(현행 제27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1) 폐기물관리법 제6조제1항 및 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제4조
2)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3항 및 폐기물관리조례 제20조
3) 지방세법 제27조 및 폐기물관리조례제27조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- 다. 합의 : 제3차 서초구규제개혁위원회 의결되었음
- 라. 기타 : 신구조문대비표, 별첨

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및 제20조를 삭제한다.

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2조 (쓰레기봉투의 현금교환) 종량제 폐기물 배출자가 다른지역으로 전출하는 사유등으로 규격봉투의 현금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어떤 판매소에서도 판매가격으로 교환할 수 있다.

제27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 (구민 등의 책무) ①서초구민(이하 “구민”이라 한다)은 자원화 및 생활 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음식폐기물등 모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②서초구내의 토지·건물을 소유·점유·관리하고 있는가는 토지·건물 내외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.</p>	〈 삭제 〉
<p>제20조 (봉투판매소의 지정해제) 구청장은 제19조제1항 각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봉투판매소를 적발하였을 때에는 판매소의 지정해제등 지체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</p>	〈 삭제 〉
<p>제22조 (쓰레기봉투의 현금교환) ①종량제 폐기물배출자가 다른지역으로 전출하는 사유등으로 규격봉투의 현금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교환하여야 한다.</p>	<p>제22조 (쓰레기봉투의 현금교환) 종량제 폐기물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사유등으로 규격봉투의 현금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어떤 판매소에서도 판매가격으로 교환할 수 있다</p>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교환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할동장으로부터 교환사유 및 교환수량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	
③ 동장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교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의 적정여부를 확한후 교환 확인서를 발부하여야 한다.	
④ 봉투판매인은 동장이 발부한 교환확인서를 제출한 자에게 동장의 확인서 및 교환할 규격봉투를 받고 현금과 교환하여야 한다.	
제27조 (가산금등) 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봉투대금을 납부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초구 일반회계의 금고업무를 청급하기 위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 이자율을 준용한다.	< 삭제 >
②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의 수수료와 반입수수료를 납부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한다.	